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후견인 담당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의견 ..... | 3 |



## I. 개요

###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6. 1. 12.
- (3) 회 부 일 : 2026. 1.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방임·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 Ⅱ. 검토 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법원의 허가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의무적으로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 후견인에 대한 감독 권한과 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3조제4항, 제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p><u>&lt;신 설&gt;</u></p> <p>제3조(후견인) ① ~ ③ (생략)</p> <p>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p> | <p>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후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호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가 있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한다.</p> <p>-----</p> <p>-----.</p> |



## 2. 주요 검토의견

### 가. 현행 제도 개관

□ 「민법」에 따르면 아동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음. 다만,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친권자에 갈음하여 법적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과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선임후견인으로 구분되며<sup>1)</sup>, 보호시설<sup>2)</sup>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sup>3)</sup>.

#### 1)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 이는 실질적인 피후견인의 보호주체가 보호시설의 장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호자 공백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복리우선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가 추가적으로 요구됨<sup>4)</sup>.

**<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 >**

| 구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br>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br>보호시설      |
|----------------|-------------------------------|------------------------------|
| 고아인 미성년자       | 보호시설의 장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br>이 지정하는 자 |
| 고아가 아닌<br>미성년자 | 상동<br>(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상동<br>(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는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sup>5)</sup>까지 후견인이 부재하게 될 수 있는데, 이에 현행법은 법원이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sup>6)</sup>,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의료 및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보건복지부는 법원허가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기능과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절차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함.

6) 만 14세 이상의 아동은 보호시설의 장의 도움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친권 등 보호자 없이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교육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제4항).

#### 나. 「민법」 준용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일반법인 「민법」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며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 보호시설 입소 미성년자의 임시 후견인 지정(안 제3조제4항)

- 개정안은 법원의 후견인 허가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후견인 신청자가 없더라도 법원의 허가 전까지는 보호시설의 장이 금융, 의료 등에 대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후견인 권한을 부여한 유사 입법례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
|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

- 법원의 후견인 선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개정안을 통해 아동이 공백 없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임시 후견인의 직무는 계좌개설 등 법률에 열거된 기본적 법률행위의 대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적정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라. 임시 후견인 감독체계 강화(안 제3조제5항~제8항 신설)

- 개정안은 임시 후견인의 변경 및 사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이는 임시후견의 적정성 확보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임시후견 직무 수행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민법」상 후견인 변경<sup>7)</sup>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안 제8항에서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임시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시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문 구조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마. 유관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호시설의 장 개인에게 임시 후견인 역할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입법례와 차이가 있으므로, 임시 후견인 역할을 부여할 경우 본인 동의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정위탁·시설입소 등 보호대상아동 전체에 대한 후견직무 전반을 규정하는 동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임.
-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방향성에 공감하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② 임시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하위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③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후견 사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

7)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 후견인이 되도록 하며, 후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현행과 달리 책임 범위를 긴급·필수 사무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00 |